

<붙임 3> 법령개정(안)

□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(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)

-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

현재	개정(안)	비고(사유)
<p>제9조(확인)</p> <p>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,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,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	<p>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 및 인허가 기관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,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인허가 기관이 확인한 경우 이상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</p>	<p>- 공사장 안전 및 근로자 보건을 위한 사용 등에 대한 중복 검토로 적정사용 기능 확보 기대</p> <p>- 일선 행정기관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여 공사 진척에 따른 집행확인에 효율적 대처 가능</p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지침)

- 특정관리대상 시설등 지정· 관리 지침(국민안전처)

현재	개정(안)	비고(사유)
<p>제2장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·해제 및 관리 제1절 지정대상 : 별표1-건설공사장 없음</p>	<p><u>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 대상 건설공사장 포함</u></p>	<p>-산업재해 중 25%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안전 관리 중요성 인식 필요</p>
<p>제7절 안전등급 평가 : 3호 안전등급 지정기준 : 부재손상· 노후화 등 점검</p>	<p>시설물 등의 안전상태 이외 <u>근로자 보건 관련 점검 항목 추가</u></p>	<p>-시설상태 이외 실제 근로자의 작업여건, 기준 이행확인이 사고 예방에 도움</p>
<p>4호 건설공사장 중 D등급 지정대상 :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(토목 100억 이상, 건축 50억원이상) 중 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사고(사망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, 부상자2명 또는 부상자10명 발생)가 발생한 현장</p>	<p><u>-대형 건축공사장</u> :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(월1회 이상 점검) <u>-대형 건축공사장 이외</u> : 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자 교차 확인 후 제출(년2회, 수시)</p>	<p>-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대형 건축공사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점검 및 관리 -행정기관 인력수급· 업무량· 전문성 등 현황을 감안하여 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자의 역할 강화</p>